

## 심 사 보 고 서

2010. 9. 14.

행정위원회

###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19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9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 9. 7)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 제 案 說 明 者 : 재 정 경 제 국 장 안 동 수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내용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정한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제4항제6호).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개정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범위를 상향 조정(안 제38조제4호).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현 영)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2009년 1월 8일 및 2010년 4월 22일 개정된 사항과 2009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안 제27조제4항제5호에 기존에 일반재산 대부요율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던 “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을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함.
- 안 제27조제4항의 대부요율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는 대상에 “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수혜대상을 확대.
- 안 제38조제4호에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범위 등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긴급재원을 확보하며, 고질적인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상향 조정.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1,000m^2 \Rightarrow 1,500m^2$
  - 그 밖의 지역 :  $2,000m^2 \Rightarrow 3,000m^2$
- 이 조례안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해당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도 의견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됨.

###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 호
----------	-------

제출연월일 : 2010.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내용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 함(안 제27조 제4항 제6호).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개정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영등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범위를 상향 조정함(안 제38조 제4호).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1,000m^2 \Rightarrow 1,500m^2$

- 그 밖의 지역 :  $2,000m^2 \Rightarrow 3,000m^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0.7.8 ~ 7.28)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5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을 “영등포구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제38조제4호 본문 중 “1,000제곱미터”를 “1,500제곱미터”로, “2,000제곱미터”를 “3,0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000제곱미터”를 “1,500제곱미터”로, “2,000제곱미터”를 “3,000제곱미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4. (생략)                      5. 영등포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u>구청장이 지정한 법인</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3. (생략)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u>1,000제곱미터</u>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u>2,000제곱미터</u>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영등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영등포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영등포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u>1,000제곱미터</u> 또는 <u>2,000제곱미터</u>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영등포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u>영등포구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u>                      6.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제13조의2에 따라 <u>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u></p> <p>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u>1,500제곱미터</u>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u>3,000제곱미터</u>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영등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영등포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영등포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u>1,500제곱미터</u> 또는 <u>3,000제곱미터</u>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p>